

DOJ,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운송료 등 국제카르텔 제재

D미국 법무부(DOJ)는 4월 13일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및 여객운임 카르텔에 참여한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에 대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제재하기로 유죄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항공(Cargolux Airlines)과 일본화물항공(Nippon Cargo Airlines) 등이 참여한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카르텔도 적발하고, 상기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제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상기의 3개 항공사는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카르텔과 관련해 ① 운송료 합의를 위한 회의·대화·의사연락 참여 ② 가격 합의 ③ 합의된 대로 운송료 부과 ④ 이행 여부 감시를 위한 회의·대화·의사연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미국·한국간 도·소매 운임 가격논의회의에 참여해 가격에 합의하고 합의된 대로 운임을 부과했으며, 이후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결정된 3개 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스콧 해먼드(Scott D. Hammond)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향후에도 모든 공모자가 밝혀질 때까지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카르텔 관련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항공화물 운송료 국제카르텔과 관련해 대한항공(Korean Air)과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 15개 항공사에 총 16억 달러 이상을 부과해왔으며(상기 3개사 포함), 3명의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했다.

참고로 징역형이 부과된 임원이 소속된 항공사는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영국)과 콴타스항공(Qantas, 호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항공(SAS,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사이다.

(2009년 4월 13일)

항공사 (국적)	합의 기간	합의 내용	벌금액
카고룩스항공 (룩셈부르크)	2001. 9. ~ 2006. 2. 14.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1억 1,900만 달러
일본화물항공(일본)	2000. 4. ~ 2006. 2. 14.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4,500만 달러
아시아나항공(한국)	2000. 1. ~ 2006. 2. 14.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및 여객운임 담합	5,000만 달러

●●● 미국 ●●●

델컴퓨터 판매용 TFT-LCD 가격담합 혐의로 히타치 디스플레이 기소

샌 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델컴퓨터(Dell Computer Co.)에 판매되는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이하 "TFT-LCD") 패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히타치 디스플레이(Hitachi Display Ltd.)의 CEO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의해 기소된 사카에 소메야(Sakae Someya)와 익명의 공범자는 델컴퓨터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TFT-LCD의 가격을 담합해 경쟁업체를 제거·압박했다. 소메야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가격담합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TFT-LCD의 세계시장 가치는 약 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번 기소를 포함해 4개 기업 8명의 개인이 TFT-LCD 가격담합 혐의로 독점금지국의 수사로 구속됐고, 지금까지 5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소메야는 셔먼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셔먼법 위반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은 범죄에 의한 이득의 2배 혹은 피해자 손실의 2배의 금액이 법에 규정된 벌금액보다 많을 경우 벌금 액수가 증가될 수 있다.

2008년 12월 15일 LG 디스플레이(LG Display Co.)가 TFT-LCD의 가격담합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4억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이는 독점금지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벌금 액수였다. 2008년 12월 16일에는 샤프(Sharp Corp.)가 델컴퓨터와 애플(Apple Inc.), 그리고 모토로라

(Motorola Inc.)에 사용되는 TFT-LCD의 가격담합 혐의로 1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2009년 1월 14일 CPT(Chunghwa Picture Tubes Ltd.) 또한 같은 혐의로 6,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월 이전 CPT의 CEO인 Chieng-Hon "Frank" Lin 외 두 명의 경영자 Chin-Chun "C.C." Liu와 Hsueh-Lung "Brian" Lee가 가격담합 혐의로 구속됐다. Lin은 9개월의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이, Liu는 7개월의 징역형과 3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Lee는 6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같은 달에 LG 디스플레이의 임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7개월 간의 징역과 함께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009년 1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장은 CPT의 경영자인 Cheng-Yuan "C.Y." Lin과 Wen Jun "Tony" Cheng, 그리고 전(前) LG 디스플레이 임원에게 TFT-LCD의 가격담합 혐의로 유죄를 공표했으며, 3명의 개인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히타치 디스플레이의 가격담합 혐의는 3,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소메야의 구속은 샌프란시스코 독점금지국과 FBI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2009년 3월 31일, 연방법무부)

•••• 미국 ••••

트렐레보르그 AB에 가격담합 혐의로 1억 1,000만 달러 벌금형 선고

■ 국 버지니아와 프랑스에 위치한 스웨덴 최고의 폴리머 제조기업인 트렐레보르그 AB(Trelleborg AB)가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트렐레보르그 AB는 담합된 가격의 해운제품을 미국과 세계 각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의해 기소된 클리어 부록에 위치한 버지니아 하버 서비스(Virginia Harbor Services Inc.)[이전에는 Trelleborg Engineered Products Inc.(VHS/TEPI)로 알려져 왔다]는 폼필드 방현재(Foam-filled Marine Fenders), 부표(Buoy)와 플라스틱해양말뚝(Plastic Marine Piling)을 제작해 왔다. VHS/TEPI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폼필드 방현재와 부표를 부정 입찰하고 소비자를 할당해왔다. 그리고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플라스틱 해양말뚝을 부정 입찰했다. 이에 75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독점금지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방현재와 해양말뚝 시장에서 6명의 개인과 2개 업체가 부정입찰과 가격담합 혐의로 독점금지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폼필드 방현재는 배와 고정된 구조물 예를 들어, 부두나 방파제 혹은 떠다니는 구조물 사이에 완충기구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수로 이정표와 내비게이션 장비산업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플라스틱해양말뚝은 과거 나무로 만들어진 말뚝의 대체물로 항구나 부두를 품파일 방현재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트렐레보르그 인더스트리 SAS[Trelleborg Industrie SAS(TISAS)]를 가격담합과 부정입찰 혐의로 기소했다. 선박용 송유호스(Marine hose)를 제작하는 이 회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TISAS는 1999년부터 2007년 5월 2일까지 가격담합과 부정입찰을 통해 미국과 여타 국가의 소비자에게 피

해를 주었다. 선박용 송유호스는 유연한 고무호스로 기름탱크와 저장장치 사이에 기름을 움길 때 주로 사용된다. TISAS에 3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독점금지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독점금지국의 선박용 송유호스 시장 수사 결과, 3개 업체가 적발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명의 개인도 고소됐지만 유죄를 선고 받지는 않았다.

독점금지국의 스콧 해먼드는 “이번 가격담합으로 인해 군(軍)과 개인기업에 납품되는 해양제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가격담합과 불법입찰로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TISAS와 VHS/TEPI의 5명의 전(前) CEO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월 VHS/TEPI의 전 대표인 로버트 테일러(Robert B. Taylor)에게 24개월간의 징역형과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2008년 3월 VHS/TEPI 전 최고 금융 책임자 도널드 머레이(Donald L. Murray)도 18개월의 징역형과 7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VHS/TEPI의 전 부사장인 윌리엄 포츠(William Alan Potts)는 2008년 7월에 6개월의 징역형과 6개월간의 구류형에 처해지고 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TISAS의 전 경영자인 크리스천 칼레카(Christian Caleca)와 자크 코나르(Jacques Cognard)는 2007년 12월에 각각 14개월의 징역형과 7만 5,000달러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수사는 미국의 세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National Procurement Fraud Task Force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 기관은 예방과 양선 조치로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2006년 10월에 설립됐다.

(2009년 4월 20일, 연방법무부)

● ● ● 캐나다 ● ● ●

카르텔 및 기업결합심사제도 등 경쟁법 내용 전면 개정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3월 12일 경쟁법 주요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 경쟁당국은 후속조치로 관련 지침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

과거 모두 형사제재했던 카르텔에 대해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형사법 위반(당연위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민사상으로 제재하도록 개정했다. 먼저 경쟁자간 가격·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경성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Per-se illegal)으로 형사제재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반 시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종전의 징역형 5년에서 전 세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부과되는 벌금수준도 종전 1,000만 캐나다달러에서 2,500만 캐나다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경성카르텔 적용제외사유는 ① 공익 등 목적으로 허용된 경우(Regulated Conduct) ② 광의의 합법적 합의에 대한 부속적 성격의 합의로서, 본 합의 목적 달성을 필수불가결한 경우(Ancillary Restraints)로 규정했다.

한편, 기타 유형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당해행위 중지 등 서정명령으로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업결합

2단계 심사제도(Two-Stage Merger Review)를 도입했는데,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는 1차 심사(30일)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추가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한해 Supplementary Information

Request를 통해 임의적 2차 심사(30일)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시 경쟁당국은 30일간의 1차 심사기간 동안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게 되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30일 만료시 기업은 당해 거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추가 자료가 요구된다면 경쟁당국은 당사자에게 Supplementary Information Request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시점부터 30일 간의 2차 심사기간이 시작된다. 참고로 개정 이전에는 약식신고에 대해서는 14일, 일반신고에 대해서는 42일의 심사(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결합 완료된 기업에 대한 사후심사 가능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으며, 기업결합 신고대상기준도 거래규모 5,000만 캐나다달러에서 7,000만 캐나다달러로 완화했다.

(3) 기타 개정 내용

기존에 형사상으로 제재하던 가격차별, 약탈가격 설정, 촉진공제(Promotional Allowance) 등 가격 정책에 대해 민사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당연위법)에서 민사상 제재로 전환했지만, 경쟁에 부정적 영향(Adverse Effect)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했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경쟁당국 모두에게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반경쟁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2일, 경쟁국)

DOJ 반독점차관보에 크리스틴 바니 인준 & RWE그룹에 대한 시지남용혐의 조사중지 결정

M국 상원은 4월 20일 법무부 반독점차관보로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Varney) 내정자를 인준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바니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됐다.

신임 반독점차관보의 주 관심분야는 첨단과학 및 생명공학과 보건산업에의 경쟁법 적용이며,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이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크리스틴 바니 신임 반독점차관보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인 경쟁법 집행에 대한 비판 :

DOJ가 FTC의 특허제약사 역지불행위(Reverse Payment) 제재 노력에 반대한 행위와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무조건부 승인 사례 등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

② 반경쟁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 필요성 :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던 2007년 Leegin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을 번복하는 법안(Discount Pricing Consumer Protection Act)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③ 화물철도신입과 전미축구리그(NFL) 등 경쟁법 적용 제외 분야 축소 필요성

④ 반독점사건 분석에 있어서 법률적 이론과 경제적 이론의 균형 정립

⑤ FTC 및 세계 각 경쟁당국과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의지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3월 18일 그 동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혐의로 조사 중이던 독일 최대 가스회사인 RWE그룹이 2008년 6월 자사 보유 가스수송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이를 수용하고 위반혐의 조사중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쟁총국은 RWE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EC 조약 제82조 위반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혐의로 2007년 5월부터 공식조사를 진행해 왔다.

첫째, 가스수송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하부시장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및 마진 축소(Margin Squeeze)를 해왔다.

둘째, 정상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수송망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RWE는 자사의 가스수송망 사용에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는 등 타 사업자의 RWE 가스수송망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 등이다.

RWE그룹은 경쟁총국의 위법성 판단 및 그로 인한 제재조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사 보유의 구(舊) 서독지역의 고압가스수송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쟁총국은 최종적으로 제시된 방안을 수용하고 RWE에 대한 모든 위반혐의 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EU 경쟁당국의 에너지사업 집중조사(Sector Inquiry, 2005년) 개시 이래, 독일의 최대 에너지기업인 E.ON의 전력망 분리방안 수용 및 법위반 조사 중지조치(2008년 11월)에 이은 두 번째 개시적 성과에 해당된다.

Europe

(2009년 3월 18일, EU위원회)

(2009년 4월 20일, 미국 상원)

● ● ● E U ● ● ●

마스터카드의 요금체계 전면 개편에 주목

닐리 크로스(Nelie Kroes)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다자간 교환수수료(Multilateral Interchange Fees, MIFs)의 축소와 함께 최근 수수료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의 다자간교환수수료(이하 “MIFs”)에 관한 2007년 EU 조약의 제한적 영업관행을 위반했던 것에 대해 닐리 크로스 집행위원장은 “현재까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MIFs를 2008년 6월 12일부로 무효화했지만, 다시 같은 해 10월부터 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마스터카드는 현재 국제교류를 위해 MIFs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EU 독점금지법에 제시된 MIFs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방법론에 따르면 소비자 신용카드의 MIFs는 0.30% 낮아지고 소비자직불카드는 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터카드는 또한, 2008년 10월에 발행했던 수수료 인상을 2009년 7월부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마스터카드는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7월부로 현재의 요금체계를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사안에 대해 EU 독점금지국이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닐리 크로스는 “이번 결정은 마스터카드 지불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중간업자들에게도 공정한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MIFs의 개정은 은행과 중간

업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해주고 마스터카드의 이전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위원회는 EEA(European Economic Area)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스터카드와 마에스트로(Maestro) 직불카드, 그리고 소비자신용카드가 EC 조약의 제한적 영업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MIFs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면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마스터카드 측에 6개월간(2008년 6월 21일까지) 개선기간을 제시했고, 개선작업이 지체됐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6월 12일부터 마스터카드는 잠정적으로 국제간 MIFs를 무효화시키고 소비자와 중간업자들에게 공정한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 중에 있다.

마스터카드가 MIFs 체계 변화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것에 대해 닐리 크로스는 “마스터카드가 MIFs를 다시 제기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혹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4월 1일, EU위원회)

* * * E U * * *

텔레콤 이탈리아 수신제한규정 수정안 관련, AGCOM에 확인 요구

EU 위원회는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에게 경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텔레콤 이탈리아(Telecom Italia)의 수신제한규정 수정에 관해 EU 조항과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텔레콤 이탈리아의 이번 규정 수정안은 이미 국내에서는 AGCOM에 의해 승인됐다.

이번 텔레콤 이탈리아의 (국내 적용) 수정안은 텔레콤 이탈리아의 네트워크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텔레콤 이탈리아와 경쟁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U 통신법에 의하면 AGCOM은 수정안의 처리 상황을 EU 위원회 및 다른 국가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

이번 통지는 EU 협정에 순응하고 새로운 법안을 재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다.

EU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ading)은 “AGCOM에 의해 승인된 텔레콤 이탈리아의 이번 수정안은 이탈리아 국내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위원회와 AGCOM 사이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수정안이 잘 처리된다면 다른 나라들에게 이탈리아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가 표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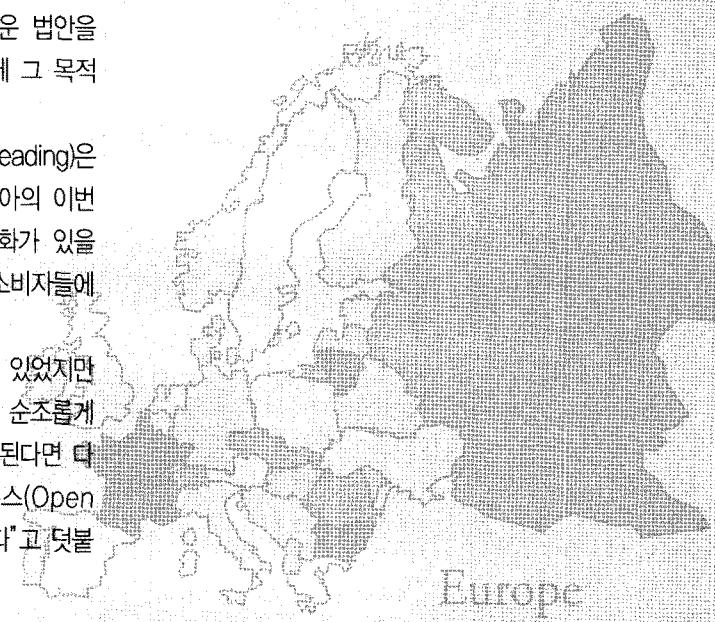
그러나 그녀는 “위원회와 다른 국가의 통신위원회의 동의 전에 오픈 액세스가 시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보낸 이번 서한에서는 AGCOM의 분석을 포함해 텔레콤 이탈리아의 새로운 수정안에 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음을 언급했다.

위원회 입장에서 이번 수정안이 현행 규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EU 협정과 부합해야 한다.

텔레콤 이탈리아의 수정안은 EU 협약과 다른 국가들의 법안과 조화를 이뤄야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EU위원회)



••••• 독일 •••••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칠란트 & 베스트팔렌 AG 등 액화가스공급업체에 벌금 부과

연 방카르텔청은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칠란트 (Microsoft Deutschland GmbH)에 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Office Home & Student 2007'의 재판매가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소매상들은 2008년 가을 아울렛에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과대광고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광고활동이 전개되기 전인 2008년 10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칠란트 직원과 소매상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Office Home & Student 2007'의 가격을 협의했다.

모든 공급자와 소매상이 불법적인 가격결정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소매상들과 가격을 협의해서는 안 되며, 공급자와 소매상들은 소매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칠란트는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2009년 4월 8일, 연방카르텔청)

연 방카르텔청은 액화가스 공급업체인 베스트팔렌 AG(Westfalen AG)와 뮌스터(Munster), 그리고 프로판 라인가스(Propan Rheingas GmbH & Co. KG, 브륄(Brühl))에게 총 414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업체는 적어도 1997년부터 2005년 5월까지 탱크(Tank)와 압축가스(Bottled Gas)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으며, 소비자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은 개인과 단체에게 액화가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가격담합혐의는 독일액화가스협회(Deutscher Verband Flüssiggas e.V., DVFG) 내에서 이뤄졌다. 2005년 5월에 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액화가스 제공업체들은 적어도 1997년부터 DVFG에서 서로의 고객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공모했으며, 다른 업체의 직원들이 경쟁업체의 고객을 끌어 들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됐다. 고객이 제공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일종의 '방해요금'으로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 가격담합과 탱크가스 사업은 통지시스템에 의해 유지됐다. 이들은 제공업체가 변경될 경우는 수시로 고객 및 보상정보 등을 교환했다. 독일의 액화가스시장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고객독점과 가격담합으로 인해 소위 '독립제공자'가 제공하는 가격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됐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위법행위는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전 법안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모회사와 자회사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투실히므로 벌금이 부과될지라도 독일 액화가스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15일, 연방카르텔청)

벡터캐피털의 알라딘 나리지 시스템 인수 승인

연

방카르텔청은 투자회사인 벡터 캐피털(Vector Capital)의 알라딘 나리지 시스템(Aladdin Knowledge Systems Ltd.)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의 40~6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이프넷(SafeNet)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급변성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아무런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RM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콘텐츠 사용자의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인증서를 가진 개인에게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인가서 소지자가 어떻게 콘텐츠를 사용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단순하게 정보를 열람했는지 혹은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했는지, 아니면 콘텐츠의 내용 자체를 변경했는지를 알 수 있다.

DRM 시스템의 주요 활동분야는 엔터테인먼트(영화, 음악, 게임 등) 분야이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DRM 시스템의 관련 시장규모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기술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3개 분야와 매우 비슷하지만, 조사 결과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사업자 구조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연방카르텔청은 DRM 소프트웨어 시장은 분할된 시장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의 보호시스-

템의 추가적인 분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 결과, 관계자들은 DRM 솔루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주식을 40~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우위선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변화가 빠르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에 창조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자는 과거에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을지라도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가 많다.

한편, 관련 네트워크 효과는 제공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사 결과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2009년 3월 11일, 연방카르텔청)

Europe

특정불공정거래방법 위반한 다이와에 배제조치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다이와(大和)에 대해 독점금지법 규정에 근거해 수사한 결과, 동법 19조인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납입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방법 위반으로 배제조치를 명령했다.

다이와는 카나자와시(金沢市) 소재의 코린보점(香林坊店)과 토야마점(富山店)에 '종업원 방문판매' 및 '사은특별봉사회'라는 판매안을 고안, 설정된 판매목표금액의 달성을 위해 제품납입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코린보점과 토야마점에 다이와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요구했다.

당해 납입업자의 종업원들 또한 코린보점과 토야마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다이와의 종업원은 납입업자와 주문량에 관해 협의하고 납입업자와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다이와는 2007년 8월경에 코린보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납입업자에게 그림을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매매가 진행됐다.

그리고 코린보점과 토야마점에서 종업원 방문판매가 시행되는 동안 납입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도록 하여 코린보점과 토야마점의 매장에서 상주하는 납입업자 종업원에게 다이와에 납입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통상 판매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납입업자종업원에게 판매업무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다이와는 코린보점과 토야마점에서 매년 3월과 6월에 개최하는 '다이와 봄축제'와 '다이와 여름축제'라고 하는 대규모 세일을 실시하는 동안,

다이와에 파견된 납입업체 종업원을 통해 코린보점과 토야마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판매행사공지를 서한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리고 배달업무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았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에서는 다이와에게 배제조치를 명령했다.

(2009년 3월 5일, 공정취인위원회)

Japan